

# 히가시오사카시 인권존중 도시실현 조례

2004년 7월 제정

우리들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보장하는 일본국헌법의 이념 및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움과 동시에, 존엄과 권리에 대하여 평등하다고 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이념에 기초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의 실현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인종, 민족,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벌, 또는 장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금도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상황의 변화 등에 의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시는 종합계획에 있어 '인간존중에 뿌리를 내린 시민도시의 창조'를 기본이념으로서 내거는 동시에, 차별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않고, 긍지와 희망을 품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함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들은 인권존중도시의 실현을 위해 시와 시민이 협동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며, 이 조례를 제정한다.

## (목적)

**제 1 조** 이 조례는 인권존중의 도시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책무 및 시민(본 시의 구역 내로 출퇴근, 또는 통학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사업자(본 시의 구역 내에서 공적, 사적을 막론하고, 및 영리, 비영리를 막론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인권의식의 고양을 꾀하기 위한 시책 및 인권 옹호에 기여하는 시책(이하 '인권시책'이라고 한다.)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 65호),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활동의 추진에 관한 법률(2016년 법률 제 68호), 부락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2016년 법률 제 109호) 기타 인권존중을 목적으로 한 법률 등과 더불어 인권이 존중되는 풍요로운 도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시의 책무)

**제 2 조** 시는 전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권존중의 시점에 서서 모든 시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인권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책무를 소유한다.

## (시민의 역할)

**제 3 조** 시민은 모든 생활의 장애 있어, 서로 인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인권존중도시 실현의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다.

## (사업자의 역할)

**제 4 조**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있어, 인권존중의 관점에 따라 활동을 추진하고 아울러, 시가 실시하는 인권시책의 추진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추진 체제의 충실)

**제 5 조** 시는 인권존중도시 실현을 추진하기 위하여, 나라, 오사카부, 관계 각 단체 등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추진 체제의 충실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히가시오사카시 인권존중도시실현심의회)

**제 6 조** 본 시에 히가시오사카시 인권존중도시실현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2** 심의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인권존중도시실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3** 심의회는 전 항목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심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회의로 한다.

**5** 심의회는 위원 20 명 이내로 조직한다.

**6** 위원은 학식경험이 있는 자, 기타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7**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보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8** 전 각 항목에 규정하는 이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 5 조의 규정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